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용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552 발의연월일: 2024. 9. 3.

발 의 자:이용우·황정아·박민규

김남근 • 정진욱 • 박홍배

김 윤·백승아·이광희

장종태 · 임미애 · 박희승

의원(12인)

제안이유

우리나라 출생아 대비 유산 비중(유산율)은 2013년 37.6%에서 2022 년 47.6%로 매우 크게 상승하였으며, 같은 기간 조산율도 6.5%에서 9. 8%로 눈에 띄게 높아졌음.

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'임신 36주 이후'부터를 임신 말기로 간주하고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. 그런데 의학적으로 임신 후 14주를 임신 초기, 29주부터 42주까지를 임신후기로 구분하며, 임신 초기와 임신후기는 유산과 조산의 위험으로부터 특별히 모성을 보호할 필요성이 큰 기간으로 보고 있음.

또한 현행법상 쌍둥이를 임신한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의 사용일수를 추가로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된 반면, 수술·치료 등 의료서비스의 제공 및 성장과정상 집중관리를 필요로 하는 미숙아·선천성

이상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 연장 근거가 없는 실정임.

아울러 현행법은 연차 유급휴가 산정 시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을 연차 유급휴가 산정 시에 이를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나,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·태아검진·수유시간 및 배우자 출산휴가·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기간은 이를 출근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없어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유산 및 조산 위험이 높은 임신 초기·말기의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확대하고, 미숙아·선천성이상아 출산 시의 출산전후휴가 기간 을 연장하며, 연차휴가 산정 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이를 출근한 것으로 보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연차 유급휴가 산정 시, 노동자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·태아검 진·수유시간 및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·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경우 이를 출근한 것으로 보도록 함(안 제60조제6항).
- 나. 노동자가 미숙아·선천성이상아를 출산한 경우 사용자가 주어야 하는 출산전후휴가의 기간에 30일을 추가함(안 제74조제1항 등).
- 다.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는 임신주수를 '12주 이내, 3

6주 이후'에서 '14주 이내, 28주 이후'로 확대함(안 제74조제7항).
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0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기간"을 "기간 및 시간"으로 하고, 같은 항에 제2호의2부터 제2호의5까지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2의2. 제74조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 간
- 2의3. 제74조의2제1항에 따라 사용한 태아검진 시간
- 2의4. 제75조에 따라 사용한 수유 시간
- 2의5.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8조 의2제1항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로 휴업한 기간
- 4.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의2 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 제74조제1항 전단 및 후단, 같은 조 제2항 후단,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"임신한"을 각각 "임신하거나 「모자보건법」에 따른 미숙아 또는 선천성이상아를 출산한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7항 본문 중 "12주"를 "14주"로. "36주"를 "28주"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- 제2조(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적용례) 제60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시행 이후 제74조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, 제74조의2제1항에 따른 태아검진, 제75조에 따른 수유시간,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- 제3조(출산전후휴가에 관한 적용례) ① 제7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「모자보건법」에 따른 미숙아 또는 선천성이상아를 출산한 사람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였거나 사용 중인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.
 - ② 제74조제2항·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사용하는 출산전후휴가부터 적용한다. 이 경우 제4항을 적용하는 때에는 사용하였거나 사용 중인 출산전후휴가의 일수를 연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0조(연차 유급휴가) ① ~ ⑤	제60조(연차 유급휴가) ① ~ ⑤
(생 략)	(현행과 같음)
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	⑥
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	
에 해당하는 <u>기간</u> 은 출근한 것	<u>기간 및 시간</u>
으로 본다.	
1. • 2. (생 략)	1. • 2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<u>2</u> 의2. 제74조제7항에 따른 임
	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
	하여 단축된 근로시간
<u><신 설></u>	2의3. 제74조의2제1항에 따라
	사용한 태아검진 시간
<u><신 설></u>	2의4. 제75조에 따라 사용한
	<u>수유 시간</u>
<u><신 설></u>	2의5. 「남녀고용평등과 일・
	<u>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</u>
	률」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
	배우자 출산휴가로 휴업한
	<u>기간</u>
3. (생 략)	3. (현행과 같음)
<u> <신 설></u>	4. 「남녀고용평등과 일・가정
	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
	19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기
	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

⑦ (생략)

제74조(임산부의 보호) ① 사용 기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 (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)의 출산전 후휴가를 주어야 한다.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후에 45일(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)이상이 되어야 한다.

②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 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 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(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<u>임신한</u> 경우에 는 60일) 이상이 되어야 한다.

③ (생략)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

<u>단축된 근로시간</u> ⑦ (현행과 같음)
제74조(임산부의 보호) ①
<u>임신하거</u>
나 「모자보건법」에 따른 미
숙아 또는 선천성이상아를 출
<u>산한</u>
임신하거나 「모자보건법」에
따른 미숙아 또는 선천성이상
<u>아를 출산한</u>
②
임신하거나 「모자보건
법」에 따른 미숙아 또는 선천
<u>성이상아를 출산한</u>
③ (현행과 같음)

정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 (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<u>임신</u>한 경우에는 75일)은 유급으로한다. 다만, 「남녀고용평등과일・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책임을 면한다.

- ⑤ ⑥ (생 략)
-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 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. 다만,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.
- ⑧ ~ ⑩ (생 략)

이지카기기
<u>임신하거나</u>
「모자보건법」에 따른 미숙아
또는 선천성이상아를 출산한 -
⑤·⑥ (현행과 같음)
⑦ <u>14</u> 주
<u>28주</u>
⑧ ∼ ⑩ (현행과 같음)